

Ⅱ - 6	제 목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자격에 관한 질의	
회신일자	2010-03-25	회신방법	지정부 전자민원
질 의 요 지			
○ 전기공사업운영요령에 따라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진단자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와 관련, 소속 진단자와 사업자 대표가 동일인은 아니지만 모두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인 경우와 소속 진단자와 사업자대표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진단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이고 사업자 대표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아닌 경우도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내 용			
○ 전기공사업운영요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개업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개업 재무관리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경영지도사 2인 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 이는 같은 조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업한 공인회계사와 같이 재무관리 경영지도사의 경우에도 경영진단의 업무를 개업하여야 전기공사업의 경영진단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개업하지 아니하고 다른 기관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우 즉, 대표자가 재무관리경영지도사가 아니면 전기공사업의 기업진단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재무관리경영지도사라 하더라도 개업한 경우가 아니면 진단자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같은 조항의 제3호에 따라 공인회계사 2인 이상 또는 재무관리 경영지도사 2인이상을 상시 보유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은 기업진단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